

자격 취득과정은 재교육과정으로 봄

(예: 중등 정교사(2급) 영어→중등 정교사(1급) 영어)

※ 재교육 과정 재학 중에 현직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졸업 시에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 가능

※ 특수교육 전공 양성과정에서는 이미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 한해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발급 가능

교육대학원 입학생 모집 시 유의사항

- 전공에 따른 ‘양성’ 또는 ‘재교육’ 과정 승인사항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함
- 교육대학원 입학 전형 시 개인별로 취득 가능한 교원자격증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내하고,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당 사실을 분명히 안내하여야 함
-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 시,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입시요강에 반영하고, 입학전형 시 안내하여 학교현장실습학교 선정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은 3명 이상 관련 분야의 교원(교육과정을 담당할 전임교원) 확보 필요(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및 추가승인 계획,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 제4항, 별표 1의2 관련)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가.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받아야 함

구분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사: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만 50학점 이상 - 특수학교 교사: 3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 ※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전공학점 면제(표시과목 관련학과 주·복수전공 졸업자에 한함)	2013~202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하되,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동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2013~202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하되,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동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3호에 따라 시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시각장애학생교육 및 점자를,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청각장애학생교육 및 수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3호에 따라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외의 이수 학점을 인정하되,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중에서 이수한 시·청각장애 관련 학점은 6학점(대학원 3학점) 범위 이내에서 장애유형 표시를 위한 이수 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구분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성적 기준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원은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교란 확인 필요

나. 부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기준은 2012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조

구분	2009~2012학년도 이수(시작)자	2013~2020학년도 이수(시작)자	2021학년도 이후 이수(시작)자부터
전공 과목	30학점 이상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직 과목	면제(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영역 전체)		
성적 기준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 교직 작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3.1.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교직 작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교직 작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교란 확인 필요